

# (재)송파문화재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 (비상임 이사 · 감사)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비상임 이사 · 비상임감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1년 9월 2일

(재)송파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 1. 공모 직위

- 비상임 이사 4명, 비상임 감사 1명

## 2. 임 기

- 임명일로부터 2년 (\* 송파문화재단 정관 제11조에 따라 연임 가능)

## 3. 보 수

- 무보수(\* 회의참석 수당 지급)

## 4. 주요 직무

### 정관 제12조(임원의 직무)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 감사
  2. 재단의 운영 및 제반 업무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청장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요구 및 진술

## 5. 응모 자격

### ○ 자격요건

구 분	자격요건	비 고
이 사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다양한 방면에서 문화재단의 경영에 조언할 수 있는 자 ※ 문화예술인, 학계, 언론인, 기업인, 금융인, 법조인 전직 공무원, 경제단체 임원 등	
감 사	· <u>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필수)</u>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을 겸비하고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이 있는 자	

### ○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재)송파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6. 공고 및 응시서류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1. 9. 2.(목) ~ 2021. 9. 9.(목) 18:00**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orgy7@naver.com](mailto:orgy7@naver.com)) (우편접수 불가)

○ 문 의 처: 송파문화재단 전략기획실(☎ 070-7770-3266)

### ○ 제출서류

- 지원서 및 경력기술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각 1부(최종 합격후 제출)
- ※ 제출서류는 채용공고문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7. 시험방법 및 일정

○ 서류심사: 2021. 9. 13.(월)

- 심사방법: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기준으로 심사

- 비상임 이사 평가기준

구 분	총 점	전문성	소통능력	윤리관
배 점	100	40	30	30

- 비상임 감사 평가기준

구 분	총 점	전문성	수행력	윤리관
배 점	100	40	30	30

- 결과발표: 2021. 9. 16.(목) 예정

※ 홈페이지: 송파문화재단 홈페이지(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임용절차: 후보자 추천(임원추천위원회) → 임명(송파구청장)
- 임용후보자 등록: 2021. 9. 27.(월) ~ 2021. 9. 29.(수)
- 임용일(예정): 2021. 10. 4.(월)

## 8. 기타 사항

- 지원서, 경력기술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재단 소정양식으로 접수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원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나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이 불가하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재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의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송파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해당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송파문화재단 정관 제14조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